

제정일	2024. 10. 11.
개·폐의결	이사장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숙박시설 이용 약관

제정 2024. 10. 11.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숙박시설 이용

제3장 숙박

제4장 객실 물품 등 변상

제5장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이하 “재단” 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하 통칭하여 “객실” 이라 합니다)에서 고객이 객실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준수사항과 상호간 약속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

재단과 고객이 객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계약 및 서비스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① 재단은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합니다.
- ② 재단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객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따릅니다.
- ③ 객실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고객께서 동의 해주신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객실

제5조(객실 이용수칙)

- ① 객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께서는 본 약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

고객의 숙박 등 객실 이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객실 내 난방용, 취사용 화기 등의 사용
2. 객실 내 흡연
3. 로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 등의 반입
 - 가. 동물 및 조류
 - 나.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음식 또는 물건
 - 다.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 라.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4. 객실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
5.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및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객실 외부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여 객실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행위
8. 객실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9. 객실 내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위반
 - 가. 본래의 용도 외의 사용
 - 나. 객실 외부로의 반출
 - 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

②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그 밖의 고가물은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허가없이 객실 상태를 변경하거나 비품 등의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객실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객실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객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오니,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보관품 및 습득물)

보관품 및 습득물은 객실 예약 및 체크인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단은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별표1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음식물은 당일 폐기합니다.

제3장 숙박

제7조(숙박 이용)

① 재단은 숙박 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 지불, 유실물의 반환 등을 위하여 숙박예약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며, 당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성명

나. 휴대전화번호

다. 차량번호

라. 국적

마. 지불방법(신용카드 등)

2. 외국인인 경우 : 여권번호

3. 기타 객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객께서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객실은 고객의 객실 숙박을 이용 거절 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예약의 취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재단은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 제2항에 해당될 때

2. 제13조 제7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될 때

제9조(위약금)

① 재단은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1. 위약금 부과기준

-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위약금 없음
- 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객실료 10%
- 다.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객실료 30%
- 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객실료 50%
-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객실료 70%
- 바. 사용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객실료 80%
- 사. 사용 당일 24:00 이후 및 No-show : 객실료 100%

② 재단은 고객의 숙박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재단으로의 이동 또는 객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고객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이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객실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③ 재단은 1급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1. 객실의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예약 후 재단이 위치한 지역 또는 고객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예약 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고객이 1급 감염병에 감염되어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감염 확인 후 격리기간에 한한다)

④ 재단은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

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50%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1. 예약 후 재단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2. 예약 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⑤ 본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제10조(요금의 지불)

① 고객은 체크인시 또는 재단의 지불요청이 있을 때 현금, 신용카드, 재단이 인정한 유가증권(숙박권 등)으로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개인수표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② 연박을 하시는 고객은 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인시 전 체금액에 대하여 선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고객은 투숙 시 객실이 타입별로 정한 다음과 같은 객실별 기준인원과 최대투숙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투숙 시 객실이 타입별로 정한 다음과 같은 객실별 기준인원과 최대투숙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탠다드룸 - 기준인원 : 2인 (최대 투숙인원 3인)

디럭스룸 - 기준인원 : 4인 (최대 투숙인원 6인)

⑤ 고객은 투숙 시 침구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정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침구추가는 제4항에서 정한 최대투숙인원 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 침구 : 10,000원 (1채, 1박 기준)

2. 타올 : 1,000원 (1매)

⑥ 고객은 투숙 후 객실내 기본적인 정리정돈(쓰레기분리수거 등)를 하신 후 체크아웃하셔야 하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채 체크아웃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소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인실 : 20,000원

2. 4인실 : 40,000원

⑦ 고객은 투숙 기간 내 객실 청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소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은 3박 이상 객실 사용 시 1회에 한하여 객실 청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2인실 : 20,000원

2. 4인실 : 40,000원

⑧ 고객이 체크인 후 사망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⑨ 고객이 체크인 후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실의 중요 시설문제(객실의 청소 및 정돈상태의 불량, 냉·난방 및 냉·온수 등의 고장 등)를 원인으로 고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사용가능한 객실을 재배정하거나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이 미정비객실에 입실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객실 정돈상태 불량을 원인으로 한 객실이용계약의 해제는 제한됩니다.

제11조(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① 체크인은 15:00이며 체크아웃은 11:00로 운영됩니다. 단, 영업상황에 따라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조기 체크인을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조기 체크인이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오전 12시부터 시간당 객실료 정가의 10%의 비용을 추가하여 객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12시 이전에 객실을 요청하는 경우 정가 1박 요금이 추가됩니다.

③ 고객이 지연 체크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객실은 당일 예약상황에 따라 최대 16:00까지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6:00 이전 : 시간당 객실료 정가의 10%

2. 16:00 이후 : 정가 1박 요금 추가

④ 고객이 사용하던 객실의 연장 투숙을 요청할 경우 고객 요청에 의한 시간 타입을 적용합니다.

제12조(숙박책임)

① 재단은 고객이 객실 프론트에서 체크인 했을 때부터 숙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고객이 체크아웃 시 책임이 끝납니다.

② 숙박예약 후 재단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객실 이용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고객에게 사용가능한 객실(동등 또는 상위)의 재배정 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1. 보상기준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 보상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50% 보상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80% 보상

③ 재단은 고객이 객실 내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9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은 고객과 합의하여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9조제3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재단은 고객의 예약금만 환급하며 기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제9조제4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객실은 예약금의 50%를 환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13조(숙박의 거절)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길 원하는 경우

5. 고객이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감염병환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미성년자의 경우

제14조(숙박 계속의 거절)

객실은 체크인이 완료된 고객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 제3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2.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3. 객실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을 주문 또는 반입하여 객실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객실 내에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
5. 로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객실 내에서 도박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7.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 한 경우
8. 객실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9. 객실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숙 하는 경우
10.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11. 윤락행위로 인한 풍기 문란 시
12.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및 행동을 하는 경우
13. 제5조의 객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5조(객실 Key 인수 및 반납)

고객은 객실 프론트 방문을 통하여 체크인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프론트에서 객실문 오픈에 필요한 카드키를 수령하며, 체크아웃 시 카드키를 프론트에 직접 반납합니다.
2. 투숙 중 카드키를 분실하는 경우 지체없이 프론트에 카드키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키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카드키 재발급 비용 : 11,000원 (1장)

제4장 객실 물품 등 변상

제16조(손해배상)

- ① 재단은 고객 또는 그 밖의 객실 이용자(이하 “객실이용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실 구조물,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객실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객실료를 합한 금액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재단은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체크아웃 이후 객실 내 냄새(고기류, 생선류, 향수, 흡연 등)로 인해 당일 객실 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용객실의 정액 요금 20%를 청소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재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과실의 정도
2. 물품의 사용연수 및 파손 정도

제17조(배상 물품의 구분과 배상액)

- ①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물품의 구분과 배상금액은 별표2을 기준으로하며, 별표2에 없는 물품의 경우 당사 구입가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배상물품의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 제한합니다.

제5장 기타

제18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객실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9조(관할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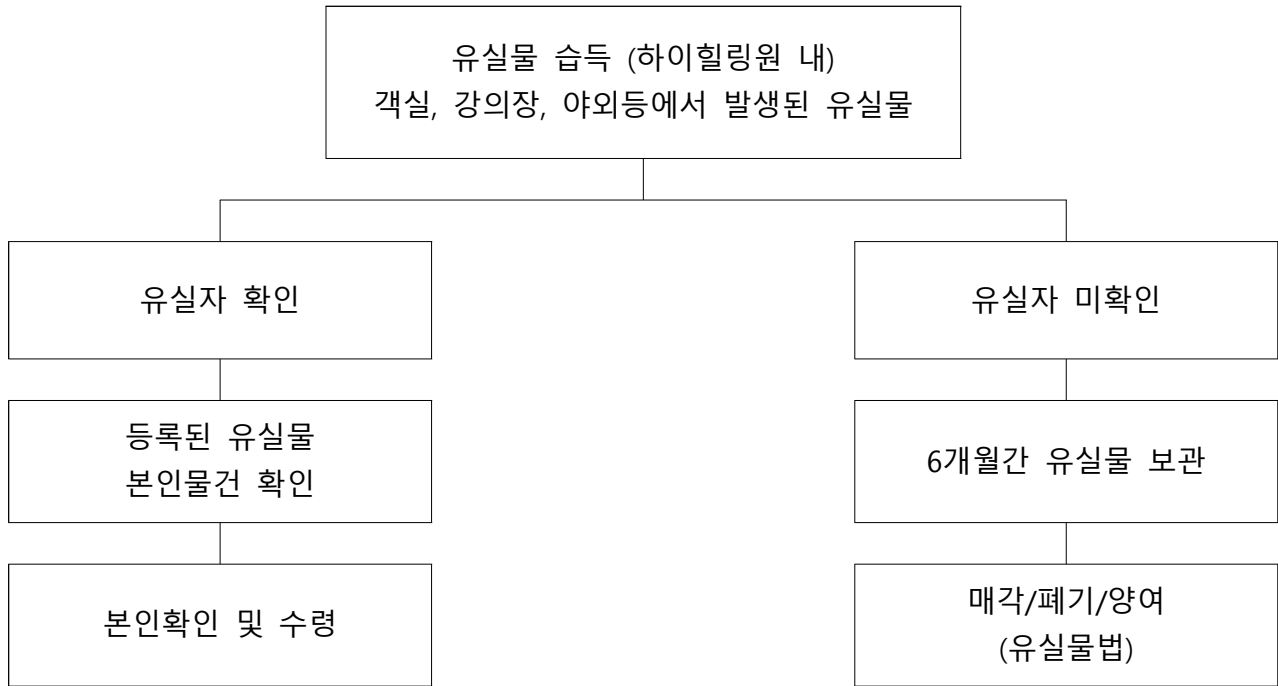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의합니다.

부 칙 <2024. 10. 11.>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실물 처리기준

○ 유실물 처리 절차



○ 유실물 처리 기준

구분	물품명	처리기준	비고
귀중품	귀금속/명품브랜드	경찰서 인계 (주 1회)	관할 경찰서 (6개월 후 국가귀속)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카메라 등		
	기타 전자제품		
	기타 고가 추정 물품		
비재산 물품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포함물품	우체국 인계 (주 1회)	관할 우체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등		
의류 및 잡화	일반 의류	자체보관 (6개월)	기간경과 후 폐기/양여
	가방, 신발 등 잡화		
	레저용품류		
	침구류		
	화장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기타 의류 및 잡화		

○ 유실물 처리 기준

구분	물품명	처리기준
음식물	개봉된 음식물	즉시 폐기
	미개봉된 음식물	익일 폐기
일회용품	사용된 일회용품	즉시 폐기
	미사용된 일회용품	익일 폐기
의류	사용된 속옷	즉시 폐기
	미사용된 속옷	익일 폐기
	의류 부속품(단추, 손수건 등)	
	짜 없는 물품	
기타	포장지(쇼핑백, 비닐 등)	즉시 폐기
	영수증	
	파손품	
	젖은 물품	14일 후 폐기
	유기 물품	

[별표 2] 배상품품 및 배상금액

구분		배상금액(원)	비 고
가전류	도어락	440,000	1. 청구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2. 부분파손 발생 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A/S 견적확인 후, 고객에게 A/S비용 청구 3. 완전파손 혹은 단종으로 A/S 불가할 경우 동일 사이즈 또는 동급 신품가액 으로 변상 4. 3항의 경우 시장가격의 변동 또는 감가 상각을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음
	출입카드키(RFID)	10,000	
	객실전화기	13,000	
	냉장고	198,000	
	커피포트	42,000	
	헤어드라이어	23,100	
	벽시계	22,000	
가구류	침대프레임	170,000	
	침대매트리스	139,000	
	침대협탁	56,900	
	객실 방문	110,000	
	방문 손잡이	35,200	
	싱크대	220,000	
	블라인드	38,500	
	롤 방충망	46,800	
	이불장/옷장	330,000	
	전화테이블	48,000	
	원형티테이블	90,000	
	원형좌식의자	35,200	
	사각좌식의자	35,200	
	거울	44,000	
화장실 수전	26,400		
소모품	머그컵	10,200	
	컵트레이	20,000	
	타올	2,300	
	쓰레기통	7,000	
	빗자루/쓰레받이	5,000	
	슬리퍼	7,900	
	휴지걸이	2,200	
	비누거치대	6,600	
	옷걸이	7,500	